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(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
1. 투자실적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(안 제4조제1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투자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추가(벤처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신설)에 따라 벤처투자법령의 투자비율 산정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 근거 마련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를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실적 범위에 반영
 - * 창업기획자·개인투자조합·벤처투자회사·벤처투자조합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벤처투자 범위의 일관성 확보,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이용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2. 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’ 명칭을 ‘벤처투자회사’로 변경(안 제4조제2호 등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9504호, '23. 6. 20., 일부 개정)에 따라 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’ 명칭을 ‘벤처투자회사’로 변경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

나. 제·개정 내용

- 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’ 명칭을 ‘벤처투자회사’로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벤처투자 촉진의 입법 취지 반영, 법률 용어의 통일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3.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명시(안 제6조, 제13조, 제23조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투자조합 운용 건전성 및 출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함으로써 부적격한 자의 개인투자조합 운용을 제한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법(벤처투자법 제12조제4항제9호, 법률 제19504호)으로 상향 입법된 결격사유 조문(제6조제3항제2호*)을 삭제

*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

-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명시(제6조제4항 신설)

- 조문 삭제·신설에 따른 기타 조문 정비(제13조제2항, 제23조제2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건전성 및 출자자 보호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4. 개인투자조합 공시 기준(안 제12조의2 신설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개인투자조합 운용 건전성 및 출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의 공시 기준액을 설정하고, 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(개인투자조합의 공시)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(과태료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의 기준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금액기준을 규정
- *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투자조합의 수탁의무가 발생하는 결성액과 동일하게 설정
- 과태료의 부과기준(별표 2)에 개인투자조합 공시의무 위반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인투자조합 운용 건전성 및 출자자 보호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5.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완화(안 제17조제3호 신설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초기기업 보육과 스케일업 기능의 연계를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창업기획자 겸영 촉진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(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창업기획자·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능 연계를 통한 초기기업 보육 및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6. 유한(책임)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등(안 제23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중 차입 비중(20% 미만)의 산정기준 명확화 필요
- 유한(책임)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라 용어 정비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(벤처투자회사의 등록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등록요건 중 차입 비중을 ‘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20퍼센트 미만일 것’으로 조문 수정
- 상법상 주식회사의 ‘발행주식’에 대비하여 유한(책임)회사의 경우는 ‘출자지분’으로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인 형태에 따른 법률 용어의 정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7. 특수목적펀드의 출자·투자의무 완화(안 제3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M&A 펀드, 세컨더리 펀드 등 특수목적펀드의 별도 투자비율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, 대상 펀드의 유형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조합을 규정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9504호, '23. 6. 20., 일부 개정)으로 상장법인에 투자 가능한 M&A펀드의 투자비율 별도 산정 근거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(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M&A,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창업·벤처기업 투자의무 미적용
- M&A 목적 펀드의 상장법인 투자제한 비율을 20%에서 60%로 완화
-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M&A, 세컨더리, 지분유동화 등 특수 목적펀드*의 범위 명시

* 창업·벤처기업 투자 의무가 아닌 펀드 결성의 주목적에 따른 투자의무 별도 적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M&A 촉진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8.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(안 제35조의2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, 차입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목적회사 설립 근거 마련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(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투자목적회사의 창업·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60%*로 규정
 - * M&A 목적 펀드 등 특수목적펀드의 투자목적회사에는 창업·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 미적용
- 투자목적회사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
- M&A 목적 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출자 비율을 60% 이상으로 완화
- M&A 목적 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·합병 법인 임원 및 대주주 등 지분 참여 허용
- 단일 기업·사업 투자, 차입한도 등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세부사항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·후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9.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(안 제44조의2 신설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에 용자기관이 저리 용자를 하고,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제도 신설
- 법에서 위임한 용자기관, 투자기관, 수혜법인의 범위와 용자기관의 신고의무 명시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(투자조건부 용자 계약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기금관리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명시
- 투자조건부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코넥스 상장 법인 추가
- 투자조건부 용자기관의 분기별 신고사항 규정
- 용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*와 개인투자조합 추가

* 유한(책임)회사, 창업기획자, 집합투자업자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후속투자를 받기 전 초·중기 단계 스타트업의 자금애로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10. 투자조건부 용자 신고자료의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48조제2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을 체결한 용자기관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자료 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(권한의 위임 · 위탁 등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한국벤처투자 위탁 업무에 투자조건부 용자 신고자료 관리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투자조건부 용자 신고자료 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